

제 251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9.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해 용]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2020년도 기금 변경(안)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적립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 ‘19년도말 조성액① |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 | | ‘20년도말 조성액 ②=③+ ① | 비고 |
|----------------|----------------|------------|-------------|----------------------|----|
| | 수 입 ② | 지 출 ③ | 증감 ④=②-③ | | |
| 160,000,000 | 2,560,000 | 10,000,000 | △7,440,000 | 152,560,000 | |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 '20년도말 조성액 ① | 용자금 미회수채권 ② |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③ | 총 조성규모 ④=①+ ②- ③ |
|-----------------|----------------|--------------------|---------------------|
| 152,560,000 | - | - | 152,560,000 |

○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 '19년도말 조성액① |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 | | '20년도말 조성액 ⑤=④+ ① | 비고 |
|----------------|----------------|----------|-------------|----------------------|----|
| | 수 입 ② | 지 출 ③ | 증감 ④=②-③ | | |
| 147,530 | 18,200 | 20,228 | △2,028 | 145,502 | |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 '20년도말 조성액 ① | 용자금 미회수채권 ② |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③ | 총 조성규모 ④=①+ ②- ③ |
|-----------------|----------------|--------------------|---------------------|
| 145,502 | - | - | 145,502 |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 기 금 명 | 2019년말 조 성 액 ① |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 | 2020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 증감 ⑤=④-① |
|----------|----------------------|-------------------|------------|-----------------------------|-------------|
| | | 수 입 ② | 지 출 ③ | | |
| 합 계 | 160,147,530 | 2,578,200 | 10,020,228 | 152,705,502 | 2,516,460 |
| 재정안정화적립금 | 160,000,000 | 2,560,000 | 10,000,000 | 152,560,000 | △7,440,000 |
| 식품진흥기금 | 147,530 | 18,200 | 20,228 | 145,502 | △2,028 |

5. 검토의견

▣ 재정안정화적립금<기획예산담당관>[p25]

-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2020. 7. 28. ~ 8. 11. 간 지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 8. 24.)됨에 따라 군민들의 안전한 조기 복구를 위해 재난·재해 예비비로 100억원을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식품진흥기금<민원소통과>[p31]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공익신고로 인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청구에 따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 상환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